



등록번호	친환경농업정책 과-13997
등록일자	2022. 9. 15.
결재일자	2022. 9. 15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농업정책팀 장	친환경농업 정책과장	농축산식품 국장	정무부지사
신순형	송기웅	김영준	한인수	전결 2022. 9. 15. 김희현
협조				

- 2022년 하반기 -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계획(안)

2022. 9. .



(친환경농업정책과)

협치·사회적가치 기반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

분야 및 항목	검토 및 고려 사항	완료	해당 없음	비고
도민참여와 협치				
도 민 참 여	▶ 도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의견청취(공청회, 토론회), 설문조사, 도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가 자 문	▶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위원회, 자문회의, T/F운영, 도의회, 타당성 검토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갈 등 관 리	▶ 이해관계인을 파악하는 등 갈등(특혜, 위화감, 다투기 등) 발생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협업 및 공동 문제 해결	▶ 관련 부서 사전협의(협조) 및 기관 간 협력·협업 하였습니까? 예) 유관기관, 타 부서, 중앙부처 등 ▶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 구성을 고려하였습니까? 예) 워킹그룹 구성 등 협업기구 마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데 이 터 기 반	▶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? 예) 사전검토 분야(교통/환경/관광/도로 등) 이행여부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회적 가치				
인 권	▶ 사회적 약자(취약계층) 배려, 차별금지, 개인정보 보호, 기본권 보장 등을 검토하셨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지역경제공헌	▶ 지역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,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검토하셨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성평등				
성 인 지	▶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는가? 예) 성별 고정관념, 성별 격차 원인, 성별 요구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여성친화도시	▶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요소(관점)를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여성대표성 제고, 평등한 경제·사회적 참여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
- ❖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(※비고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- ❖ 실국장이상 결재하는 중요 대내문서인 경우에 한해 표지 다음에 첨부하여 결재 시행

'22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계획(안)

- ❖ 농·임·축·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로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.
- ❖ 코로나19 장기화, 신3고(고물가·고유가·고금리)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경영부담 경감.

I 기금 개요

1. 설치 근거

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7조 제3항
- 「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2. 기금 자원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* 도 일반회계 예산의 1% 이상 출연
-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
- 기금 운용발생 수익금 등

3. 기금 설치연도: 2000년

4. 용자 금리

(단위: %)

구 분	협약금리	수요자금리	이차보전금리	비 고
보 증 서	4.3	0.7	3.6	
부 동 산	4.6	0.7	3.9	
신 용	5.4	0.7	4.7	

* 농수산물 수매자금: 협약 3.6%, 수요자 0.7%, 보전 2.9%

II '22년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

- '22년 상반기 용자 신청 조기 신청: '22. 1. 28.
- '22년 상반기 용자 추천 대상자 확정: '22. 3. 21.
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도래자 1년 연장 추진 '22. 8. 4.
-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협약금리 조정 결정: '22. 9. 14.
 - (수요자금리) 0.5% → 0.7%, (보전금리) 2.7% ~ 3.6% → 3.6%~4.7%
- * 적용시기(대상): '22년 하반기 신규 용자 추천 대상자 및 1회 연장 대상자 적용

Ⅲ '22년 하반기 용자 지원 계획

1. 용자추천 규모: 2,200억원 범위내

- ❖ 용자규모는 신규 추천 및 운전자금 용자 상환기간 1회 연장 등 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반기 용자 지원 계획 대비 신청액이 많을 경우, 신규 추천 건에 대해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.

* '22년 상반기 용자 추천 금액: 2,743억원

2. 지원대상

-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·임·축·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

- ❖ 용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(법인)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.

※ 3개월 기산은 매해 용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.

- ❖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-8호(2019. 2. 8)호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」 및 「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조를 따른다.

- ❖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·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,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.

- ❖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.

※ 농어가, 생산자단체 개념 등은 용자지원 지침 'VI 기타사항(용어의 정의)' 참고

3. 지원 제외 대상
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, 「사립학교법」에 의한 교원(교수 포함) 및 직원, 국가(대사관 등 포함)·지방공사·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, 농(축)·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 제외
- 단,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간접사용근로자, 무기계약직근로자, 친환경 농산물인증농업인(친환경 인증면적에 한함), 후계 농·어업 경영인은 지원

- 본인의 농·어업 이외 종합소득(소득금액)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

- ❖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①상반기 용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②하반기 용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

-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(어)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(어)업법인 신고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

- 자본금 50억 원 이상 출자 법인
-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* 중소기업육성기금, 관광진흥기금 등
- 영농·어조합법인과 농(어)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아래의 사업범위(부대사업)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·어조합법인 또는 농(어)업회사법인(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의5)

❖ **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(영농조합법인 정관례)**

- ①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
- ②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- ③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
- ④ 농작업의 대행사업
- ⑤ 농산물의 공동 출하·가공 및 수출 사업
- 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

❖ **영어조합법인의 사업 범위(영어조합법인 정관례)**

- ① 공동어로 및 양식 등 공동어업활동에 관한 사업
- ②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- ③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
- ④ 어업작업의 대행
- ⑤ 수산물의 공동 출하·가공 및 수출 사업
- 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

❖ **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**

-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
-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
- ③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
-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·수리 및 보관사업
-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
- ⑥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

❖ **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**

- ①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
- ②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
- ③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
- ④ 수산장비 등의 임대·수리 및 보관사업
- ⑤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

4. 주요 지원 사업

-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
-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
-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사업
-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

-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
- 농수산물 과잉생산(어획)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수매하는 사업
-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
- 어선침몰 또는 화재(전소인 경우만 해당)시 특별지원

5. 용자금리: 0.7% (용자대상자의 부담이율)

6. 용자조건

-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

구 분	운 전 자 금	시 설 자 금
정 의	❖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, 인건비 등의 지급에 쓰는 자금	❖ 시설에 쓰이는 자금으로 운전자금 이외의 자금
용 자 기 간 및 상 환	❖ 2년 이내 (1회 연장) ❖ 원금상환은 용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용자기간 내 분할상환	❖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- 10회 균분상환
용 실 행 기 간	❖ 3월 이내	❖ 6월 이내
기 타	❖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, 합산하여 개인 및 법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(각각의 경우 최소액은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함) *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으로 변경 불가 * 시설자금은 운전자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시설자금 용자액만큼 운전자금 사업량 지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❖ <u>운전자금 1회 연장 시에는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, 어선원부 등)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.</u>	

- 그 외 기타사업

- 용자지원 지침 'Ⅲ 용자지원 세부기준' 의 사업별 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

IV 용자신청(공고) 기간 및 접수처

1. 용자 신청[공고] 기간: '22. 9. 19.(월) ~ 9. 30.(금) (12일간)

2. 용자 신청 접수처: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3. 접수방법
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'22. 9. 19.(월) ~ 9. 23.(금),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'요일제' 적용
 - * (요일제 대상기간) `22. 9. 19.(월) ~ 9. 23.(금)
 - 월 1,6 화 2,7 수 3,8 목 4,9 금 5,0

4. 용자취급 금융기관

- 제주은행, 새마을금고중앙회, NH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, 지역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(지역 농·축협), 산림조합중앙회, 신협중앙회 제주지부,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

V 행정사항

- 읍·면·동, 행정시에서는 "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 업무 지침"에 의거 용자접수 등 추진
 - 용자신청서 및 전광판 등에 "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" 문구 반드시 홍보
 - 행정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, 전광판 이용하여 복권기금 지원사업 홍보 및 자생단체 회의 홍보 내용 등 제출 (행정시 수합)
- 행정시에서는 공고안(별첨)을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농어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신청 접수 상황 적극 홍보
 - 읍·면·동, 마을회관 게시판 등 이용 게시

❖ 행정시, 읍면동 홈페이지, 현수막 등 복권기금 지원 홍보 문구(안)
⇒ "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"

- 읍·면·동에서는 농어업인 등으로부터 용자신청서를 접수 마감 후 행정시장에게 신청현황 등 제출(읍면동→행정시): '22. 10. 7.(금)한

* 신청서 접수 즉시 전산입력 완료(HAMUS 주민소득금고용자시스템)

** 신청서 접수 후 전산 미입력 등으로 추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

- 행정시에서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검토 및 조정 후 결과 제출(행정시→도): '22. 10. 14.(금)한
 - (서식 4)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추천 및 대상자 명단
 - (서식 5) 농어촌진흥기금 용자금 신청내역 및 용자추천 내용
 - * 3억 원 이상 신청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 포함
 - ※ 복권기금 홍보 실적 제출

- 기금 용자취급 금융기관에서는 회원조합에 홍보하여 농·어업인이 적기에 용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 식

- ▶ (서식 1) 용자신청서
- ▶ (서식 1-1) 사업계획서(법인 등)
- ▶ (서식 1-2) 사업계획서(개인용)
- ▶ (서식 1-3) 사업계획서(농어촌민박용)
- ▶ (서식 2) 확정(변경)통지서
- ▶ (서식 3) 읍면동장(임대차)확인서
- ▶ (서식 4~5) 제출서식

<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>

신청사업명				
신청인	주 소			
	성 명		생년월일	
	연락처 (자 택) (휴대폰)		E-mail	@

2022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다 음

-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
-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

20 년 월 일

신청자(동의자) : (서명)

제주특별자치도 ○ ○ 시장 귀 하

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<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>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2022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, 소득증빙을 위한 각 항목 (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)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2022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유효 기간 내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, 동의 거부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.

<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>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도, 행정시, 읍면동, 협약 금융기관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), 소득 증빙을 위한 각 항목 등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·임·축·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, 동의 거부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.

(서식1-1) 사업계획서(법인 등 단체·수출업체용)

사업 계획서

(법인 등 단체·수출업체용)

법인 등 단체현황

① 주 사업내용	② 등 록 일
③ 자 산 규 모	④ 참여 농가수 명
⑤ 사 업 규 모	⑥ 연 소득액 백만원

사업계획

⑦ 사 업 명				
⑧ 규 모				
⑨ 총사업비	백만원(자기자본 ,진흥기금융자 ,기타차입금)			
⑩ 공사기간				
⑪ 주사업내용				
⑫ 연간소득액 (조수익)	만원			
소요자금 조달계획	소 요 자 금		조 달 계 획	
	소요처	금 액	자금구분	금 액
		백만원	자기자본	백만원
			진흥기금	
		차 입 금		
기존 용자 받은 금액 *필수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 기 : • 상환액 : • 대출 금융기관 : • 금 액 : • 잔 액 : 			

- ①~⑥ 법인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법인의 현재 사업내용, 등록일, 참여 농가수, 사업규모, 연소득액 등 기재
- 한 사업장에 대해 법인과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이 중복 신청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
- ⑦~ 법인이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(증빙자료 첨부)
- 용자총액 기재 * 용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
- * 빈칸 없이 기재

(서식1-2) 사업계획서(개인용)

사업계획서 (개인용)

□ 영농어 현황

① 주 업 종		② 연소득(조수익)	백만원
③ 농지규모	(면세유 사용량 : kl)		
④ 가축규모	가축 : 두(마리)	축사	평
⑤ 어업규모			

□ 사업계획

⑥ 사 업 명				
⑦ 규 모				
⑧ 총사업비	백만원(자기자본 , 진흥기금융자 , 기타차입금)			
⑨ 공사기간				
⑩ 주사업내용				
⑪ 연간소득액 (조수익)	백만원			
⑫ 소요자금 조달계획	소 요 자 금		조 달 계 획	
	소요처	금 액	자금구분	금 액
		백만원	자기자본	백만원
		백만원	진흥기금	백만원
		백만원	차 입 금	백만원
기존 융자 받은 금액 *필수 확인	❖시 기:	❖금액:	백만원	
	❖상환액:	❖잔액:	백만원	

- ①란은 발작물, 채소류재배, 감귤 등 지원 기준적용을 위한 유형기재
- ②란은 지원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
- ③란은 논, 밭, 과수원, 하우스시설 및 임업시설 규모 등을 세분하여 기재(농업인 및 임업인)
- ④란은 소, 돼지, 등 축종별 기재(축산농가),
- ⑤란은 어장, 어선, 양식시설 등을 구분(어업인)
- ⑥란 이하는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, 별도계획서를 작성한 신청자는 별도 첨부
- ⑨공사기간(사업기간)
 란은 시설자금 융자지원시는 반드시 기재토록하고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융자 지원 추천(융자추천금액은 총사업비의 80% 이하)
 융자 총액 기재 *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 자차액 보전에서 제외

* 빈칸 없이 기재

(서식1-3) 사업계획서(농어촌민박용)

사업계획서

(농어촌민박용)

민박운영 현황

① 업 체 명		② 대 표 자	
③ 소 재 지		④ 민박신고일	
⑤ 안전인증지정일		⑥ 지정기간	

사업계획

⑦ 사 업 명				
⑧ 규 모				
⑨ 총사업비	백만원(자기자본 ,진흥기금융자 ,기타차입금)			
⑩ 공사기간				
⑪ 주사업내용				
⑫ 연간소득액 (조수익)	만원			
소요자금 조달계획	소 요 자 금		조 달 계 획	
	소요처	금 액	자금구분	금 액
		백만원	자기자본	백만원
			진흥기금	
		차 입 금		
기존 융자 받은 금액 *필수확인	• 시 기 : • 상환액 : • 대출 금융기관 :		• 금 액 : • 잔 액 :	

①~⑥ 민박 운영 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민박소재지, 민박신고일, 안전 인증여부 등 기재

⑦~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(증빙자료 첨부)

- 농어촌민박은 시설자금(개보수비)로만 신청 가능함에 유의

융자총액 기재 *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
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

* 빈칸 없이 기재

【서식 제2호】

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대상자 확정(변경)통지서

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사업은
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용자지원 대 상 자	이 름			생년월일		
	주 소					
사업내역	사업명		사업량		용자구분	()운전,()시설
용자내역	용 자 액	백만원				
	용자기간				이율	연 %
용자취급	금융기관					
<p>《 유의사항 》</p> <p>1.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이내, 시설자금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용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용자를 받아야 하며, 동 기한 내에용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용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2. 지원된 용자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○ 용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○ 용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○ 용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진출하였을 때 <p>3.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용자 지원 할 수 없습니다. (다만, 용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)</p> <p>* 본 통지서에 의해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기준에 따라 최종 용자 지원되며,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 용자지원자는 이자보전에서 제외됨으로 용자 한도 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단, 특별용자는 용자한도 적용 제외됨.)</p>						

위와 같이 20 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시장

【서식 제3호】

읍.면.동장(임대차) 확인서

<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>

농 지				농지소유자		경작자(임차인)			임대차 기간
지번	지목 (공부)	공부상 면적 (m ²)	실경작 면적(m ²)	성명	생년월일	성명	생년월일	주소	

○ 제출 사유(구체적으로 명시) :

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

년 월 일

제출자

성명

(인)

○ 확인 결과 :

확인자 ○○ 읍·면장

(인)

○○ 마을대표

(인)

※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마을대표와 읍·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

※ 농지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법 위반, 세금 등 각종 혜택을 기대하고 계약서 미작성 사례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서식 제5호】

농어촌진흥기금 용자금 신청내역

1. 용자주체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계		개인		단체(법인)	
	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합 계							
일 반 사 업	운전						
	시설						
시 책 사 업	운전						
	시설						
수출업	운전						
	시설						

2. 사업분야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계		농업		수산		축산		임업	
	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										
일 반 사 업	개인										
	단체										
시책사업											
수출업	개인										
	단체										

※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추천 내용(서식 및 작성 예시)

연번	신청자 현황		신청내역	사업계획
1	단체명 (성명)	00영농 조합법인	시설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명 : 친환경 녹차재배 및 가공판매 · 규 모 : 수확 톤 · 총사업비 : 백만원 (자기자본 , 용자 ,기타) · 공사소요기간 : 2022. . ~ 2022. . · 조수익규모 : 억원 ~ 억원
	소재지			
	설립일			
	자산 규모		운영 자금	
	참여 농가		백만원	
2	단체명 (성명)		시설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명 : · 규 모 : · 총사업비 : · 공사기간 : ※ 사업설명 및 지원타당성
	소재지			
	설립일			
	자산 규모		백만원,	
	참여 농가		운영 자금	